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08
----------	-------

발의연월일 : 2025. 6. 23.

발 의 자 : 송옥주 · 이병진 · 주철현
이수진 · 전종덕 · 한민수
한정애 · 윤준병 · 문대림
추미애 · 김남희 · 김태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유자등’을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유실·유기동물’을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정의하고 있고, 소유자등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유실·유기동물 정의에서 소유자등의 범위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한 소유자 또는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고, 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 호텔에 맡기고 약정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유기행위에 포함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실·유기동물 정의에서 ‘소유자등’을 등록동물의 소유자나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되 영

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관련 영업자 및 사업자를 제외하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한 후 동물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1호 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소유자등”을 “소유자등(제15조에 따른 등록동물의 소유자나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관련 영업자 및 사업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위탁한 동물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 략) 3.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u>소유자등</u> 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소 유자등(제15조에 따른 등록동물의 소유자나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관련 영업자 및 사업자는 제외한다)----- -----.
4. ~ 13. (생 략)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 ③ (생 략) ④ <u>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1. <u>동물을 유기하는 행위</u>	4. ~ 13. (현행과 같음)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u>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위탁한 동물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한다)</u>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